

무역거래 형태 분류에 관한 협조요청

- 한국은행은 관세청을 통한 통관수출입 이외의 다양한 수출입 거래를 국제수지 통계에 반영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이 당행에 보고하고 있는 외환수급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대외거래 내역

- 이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해당 수출입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과의 수출입 관련 거래시, 수출입거래 형태 분류 및 수출입품목의 HS코드(10자리)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입거래 형태를 정확히 분류*

* <참고> 무역거래(통관, 무통관) 및 임가공료 관련 외환수급자료 코드 안내

- 외국환은행에 통관, 무통관 또는 무통관 중 중계무역, 가공무역 등의 항목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설명
- 가공무역 관련 거래 시에는, 임가공료 수입 또는 지급금액을 구분
- 해당 외국환은행은 업체의 설명 등에 기초하여 거래금액의 항목, 코드를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보고

○ 수출입품목의 HS코드(10자리) 정보 제공

<참고> 무역거래(통관, 무통관) 및 입가공료 관련 외환수급자료 코드 안내

항 목	코드	내 용
<수출대금 영수>		
가. 통관수출대금 영수		거주자가 통관수출 신고를 하기 전(인도전) 또는 수출 신고를 한 이후(인도시, 인도후)에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1)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출대금 영수(신조선 및 해양설비 이외)	10101	거주자가 세관에 수출신고하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신조선 및 해양설비 제외)의 수출대금을 송금방식에 의해 영수하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또는 수출신고번호)이 없음
(2)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출대금 영수(신조선 및 해양설비)	10102	거주자가 신조선 및 해양설비의 인도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송금방식에 의해 영수하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또는 수출신고번호)이 없음
(3) 사후송금방식 통관수출대금 영수(신조선 및 해양설비 이외)	10103	거주자가 세관에 수출신고한 이후*에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신조선 및 해양설비 제외)의 수출대금을 송금방식에 의해 영수하는 경우(인도시 및 인도후 영수) * 수출신고필증(또는 수출신고번호)이 있음
(4) 사후송금방식 통관수출대금 영수(신조선 및 해양설비)	10104	거주자가 신조선 및 해양설비의 인도시 및 인도후*에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송금방식에 의해 영수하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또는 수출신고번호)이 있음
나. 무통관수출대금 영수		거주자가 통관수출 신고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 직접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 거주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또는 수출신고번호)이 없음
(1) 사전송금방식 무통관수출(중계무역수출)대금 영수	10201	거주자가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구입당시의 상태 그대로(가공하지 않고) 국내의 통관수출 신고를 거치지 않고 동 국가 또는 제3국에 직접 수출하고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송금방식에 의해 영수하는 경우
(2) 사후송금방식 무통관수출(중계무역수출)대금 영수	10202	거주자가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구입당시의 상태 그대로(가공하지 않고) 국내의 통관수출 신고를 거치지 않고 동 국가 또는 제3국에 직접 수출하고 물품을 인도한 이후에 수출대금을 송금방식에 의해 영수하는 경우
(3) 사전송금방식 무통관수출(외국인도수출)대금 영수	10203	거주자가 해외공장에서 가공한 물품 등을 국내의 통관수출 신고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 직접 인도하고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송금방식에 의해 영수하는 경우
(4) 사후송금방식 무통관수출(외국인도수출)대금 영수	10204	거주자가 해외공장에서 가공한 물품 등을 국내의 통관수출 신고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 직접 인도하고 물품을 인도한 이후에 수출대금을 송금방식에 의해 영수하는 경우
(5) 사전송금방식 무통관수출(국내인도수출)대금 영수	10205	거주자(A)가 비거주자(B)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비거주자가 아닌 국내의 다른 거주자(C)에게 인도하고 물품대금은 비거주자(B)로부터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영수하는 경우 * 국내인도수출은 「대외무역법」 상의 수출이 아님
(6) 사후송금방식 무통관수출(국내인도수출)대금 영수	10206	거주자(A)가 비거주자(B)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비거주자가 아닌 국내의 다른 거주자(C)에게 인도하고 물품대금은 비거주자(B)로부터 물품을 인도한 이후에 영수하는 경우 * 국내인도수출은 「대외무역법」 상의 수출이 아님

항 목	코드	내 용
<수입대금 지급>		
가. 통관수입대금 지급		거주자가 통관수입 신고를 하기 전(인수전) 또는 수입 신고를 한 이후(인수시, 인수후)에 비거주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1)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 지급	10101	거주자가 세관에 수입신고하기 전*에 비거주자에게 수입대금을 송금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수입신고필증(또는 수입신고번호)이 없음
(2) 사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 지급	10103	거주자가 세관에 수입신고한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수입대금을 송금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수입신고필증(또는 수입신고번호)이 있음
나. 무통관수입대금 지급		거주자가 통관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물품을 수입하거나 국내 거주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하고 비거주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수입신고필증(또는 수입신고번호)이 없음
(1) 사전송금방식 무통관수입(중계무역수입)대금 지급	10201	거주자가 외국에서 판매(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재판매)하기 위하여 국내의 통관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물품을 수입하고 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수입대금을 송금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2) 사후송금방식 무통관수입(중계무역수입)대금 지급	10202	거주자가 외국에서 판매(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재판매)하기 위하여 국내의 통관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물품을 수입하고 물품을 인수한 이후에 수입대금을 송금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3) 사전송금방식 무통관수입(외국인수수입)대금 지급	10203	거주자가 해외공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국내의 통관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원자재 등을 인수하고 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수입대금을 송금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4) 사후송금방식 무통관수입(외국인수수입)대금 지급	10204	거주자가 해외공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국내의 통관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원자재 등을 인수하고 물품을 인수한 이후에 수입대금을 송금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5) 사전송금방식 무통관수입(국내인수수입)대금 지급	10205	거주자(A)가 비거주자(B)와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비거주자가 아닌 국내의 다른 거주자(C)로부터 인수하고 물품대금은 비거주자(B)에게 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 * 국내인수수입은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이 아님
(6) 사후송금방식 무통관수입(국내인수수입)대금 지급	10206	거주자(A)가 비거주자(B)와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비거주자가 아닌 국내의 다른 거주자(C)로부터 인수하고 물품대금은 비거주자(B)에게 물품을 인수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 국내인수수입은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이 아님
<임가공료>		
(1) 수입	35303	소유권 변경(수입대금의 결제)없이 수입된 재화가 국내에서 가공후 국내 또는 제3국으로 판매되는 경우 동 가공처리 관련 임가공료의 영수
(2) 지급	35303	소유권 변경(수출대금의 결제)없이 수출되었던 재화가 외국에서 가공후 그 나라 또는 제3국으로 판매되는 경우 동 가공처리 관련 임가공료의 지급